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공 중 위 생 관 리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('19.12.3) 사항을 반영하여 미용업의 세부정의 규정을 삭제하고, 영세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미용업의 세분 정의 내용을 삭제(안 제4조)

나. 과징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(안 제7조의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삭제한다.

제7조의3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,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(이하 "과징금납부의무자"라 한다)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정하여 분할 납부결정을 할 수 있다.

1.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
2.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
3.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
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⑥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제5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과징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⑦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.

1.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
2. 강제집행, 경매의 개시, 파산선고, 법인의 해산,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징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) 법 제 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 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.	제4조(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)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생략)
2. 미용업	2. 미용업
가. 미용업(일반): <u>파마 · 머리카</u> <u>락자르기 · 머리카락모양내기</u> <u>· 머리피부손질 · 머리카락염색</u> <u>· 머리감기, 의료기기나 의약품</u> <u>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</u> <u>질을 하는 영업</u>	가. ~ 마. <삭제>
나. 미용업(피부): <u>의료기기나 의</u> <u>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</u> <u>부상태분석 · 피부관리 · 제모</u> <u>(除毛) ·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</u>	
다. 미용업(손톱 · 발톱): <u>손톱과</u> <u>발톱을 손질 · 화장(化粧)하는</u> <u>영업</u>	
라. 미용업(화장 · 분장): <u>얼굴 등 신체</u> <u>의 화장,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</u> <u>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</u> <u>질을 하는 영업</u>	

마. 미용업(종합): 가목부터 라목

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
제7조의3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 ① ~ ④

(생략)

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
없다.

제7조의3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 ① ~ ④

(생략)

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의
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
(이하 "과징금납부의무자"라 한다)
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액이 100
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
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
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징금을 분
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
장·군수·구청장은 12개월의 범위
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
정하여 분할 납부결정을 할 수 있
다.

1.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
을 입은 경우

2.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
한 위기에 있는 경우

3.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
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
경우

<u><신 설></u>	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제5항의 사유를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 구청장에게 과징금 분할 납부를 신 청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 ⑥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.	⑦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과징금납부의 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 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. 1.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. 강제집행, 경매의 개시, 파산선고, 법인의 해산, 국세 또는 지방세의 채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 ⑧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건강정책과	
연 락 처	044-202-2881 044-202-2882